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남구 실무협의체 -

회 의 자 료

2022. 07. 12.

부산광역지원기관
부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
Comprehensive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

목 차

Ⅰ. 회의 개요 ····· 1

Ⅱ.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(특화포함) ·· 2

Ⅲ. 수행기관 주요 애로사항 공유 및 논의 ····16

Ⅳ.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실무협의체 정례화 논의 ·····18

Ⅴ. 기타사항 ·····19

Ⅰ. 회의 개요

1. 일　　시: 2022. 07. 12.(화) 14:00 ~ 17:00

2. 참 석 자: 30명

- 부산시 남구(1)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
- 읍면동(17) 17개 시·군·구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
- 수행기관(8) 전담사회복지사
- 광역지원기관(4) 팀장, 전담사회복지사(3)

3. 주요내용
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(특화서비스 포함)
- 실무협의체 회의구조 논의
- 수행기관 주요 애로사항 공유 및 현안 논의 등
- 기타사항

Ⅱ.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(특화포함)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
1 목적

○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

2 서비스 대상

○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에 자격이 해당하지 않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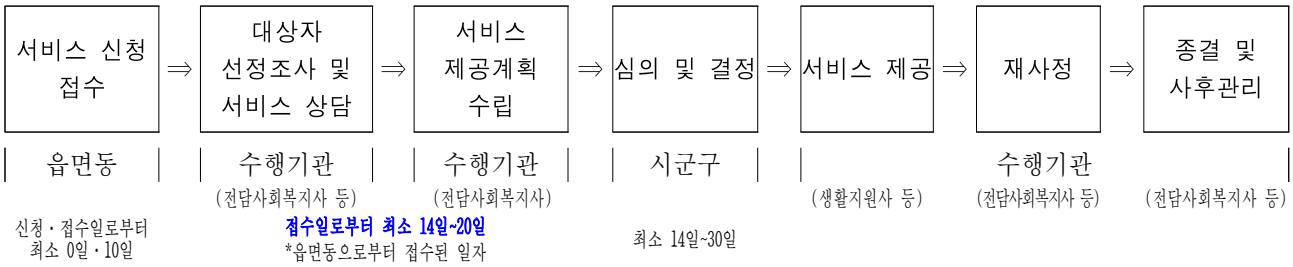
-단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

-독거·조손·고령부부 가구나 신체적 기능 저하 및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,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등

<제외대상-유사중복사업해당자>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(단,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)
② 가사-간병 방문지원사업,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(수급자격 있는 경우 포함)
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④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
*지자체는 사업의 특성, 실질적 제공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결정

3 서비스 제공절차



*재사정 : 대상자 선정조사,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

○ 대상자 구분

- 중점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
  *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

-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
  *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

  * 특수한 상황(수술·골절 등)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(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)

※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

- 특화서비스 대상 : 사회관계 단절,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

- 사후관리 대상 : 본 사업(중점돌봄군, 일반돌봄군)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

○ 서비스 신청
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

○ **서비스 신청권자**
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(이하 '신청자')
- 신청자의 친족* 및 이해관계인**(이하 '대리 신청자')

* 친족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
** 이해관계인: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

- **읍·면·동 공무원(직권 신청)**

○ **신청방법**

- 방문신청 :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**읍·면·동 주민센터**에 방문하여 신청
- 전화·우편·팩스 신청 : 부득이한 사유로 **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** 전화,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

  * **우편·팩스 신청자는 읍·면·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**하여야 함
- **읍·면·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(신청서)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**

○ **서비스 신청접수**

- 읍·면·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, 소득,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
- **수행주체 : 읍·면·동 담당공무원**
- **접수방법**

① **방문신청**

· **읍·면·동 담당공무원**은 신청서류를 받은 후 신청자 또는 대리 신청자가 내방한 상태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(이하 '행복e음') 조회를 통해 신청자의 나이, 소득,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(제외대상) 등 신청자격 확인

· 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, 신청자 또는 대리 신청자에게 대상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 접수가 불가함을 즉시 안내하고, 행복e음에 안내결과(안내일자, 안내방법 등)를 지체 없이 입력

· 즉시 안내가 어려운 경우, 전화 및 문자(SMS)를 통해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

·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한, 결과 안내방법 등 안내(접수 시 안내사항 참조)

② 전화·우편·팩스 신청

· **전화로 신청할 경우 읍·면·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**

· **읍·면·동 담당공무원**은 신청서류를 받은 후 신청자 또는 대리 신청자가 내방한 상태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(이하 '행복e음') 조회를 통해 신청자의 나이, 소득,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(제외대상) 등 신청자격 확인

· 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, 신청자 또는 대리 신청자에게 대상자 자격에 해당 되지 않아 신청접수가 불가함을 즉시 안내하고, 행복e음에 안내결과(안내일자, 안내방법 등)를 지체 없이 입력

· 즉시 안내가 어려운 경우, 전화 및 문자(SMS)를 통해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

·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한, 결과 안내방법 등 안내(접수 시 안내사항 참조)

○ 접수 시 안내사항

- 처리기한 :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

  * 자격 여부 및 서비스 내용 결정·안내

- 단, 신청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내에 자격 및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(신청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가능)

  *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은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내용,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전화(문자(SMS)병행) 또는 구두로 사전 안내하고 양해를 구함

- 결과 안내방법: 관할 시·군·구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결정 여부 등을 서면으로 안내할 예정임을 안내

  *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하되, 서면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(문자(SMS)병행)또는 구두 안내 가능

- 고지사항 안내 :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(이하 '수행기관')에서 대상자 선정조사, 서비스 상담 등을 위해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할 예정임을 안내하고, 이를 위해 수행기관에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을 안내(담당 수행기관명,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함께 안내)

  * 신청서상의 정보(이름, 생년월일 및 성별, 주소, 연락처 등) 제공. 단, 주민번호 뒷자리는 제공하지 않음

-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거주지,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지체없이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

- 수집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됨을

안내

○ 서비스 내용

- 방문형, 통원형(집단프로그램)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

구분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
직접 서비스 (방문·통원 등) ※ 4개 분야	안전지원	▶ 방문 안전지원	- 안전·안부확인 - 정보제공(사회·재난안전, 보건·복지 정보제공) - 생활안전점검(안전관리점검, 위생관리점검) - 말벗(정서지원)
		▶ 전화 안전지원	- 안전·안부확인 - 정보제공(사회·재난안전, 보건·복지 정보제공) - 말벗(정서지원)
		▶ ICT 안전지원	- ICT 관리·교육 - ICT 안전·안부확인
	사회참여	▶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	- 여가활동 - 평생교육활동 - 문화활동
		▶ 자조모임	- 자조모임
	생활교육	▶ 신체건강분야	- 영양교육 - 보건교육 - 건강교육
		▶ 정신건강분야	- 우울예방 프로그램 - 인지활동 프로그램
	일상생활 지원	▶ 이동활동지원	- 외출동행
		▶ 가사지원	- 식사관리 - 청소관리
연계서비스 (민간후원자원)		▶ 생활지원연계	- 생활용품 지원 - 식료품 지원 - 후원금 지원
		▶ 주거개선연계	- 주거위생개선 지원 - 주거환경개선 지원
		▶ 건강지원연계	- 의료연계 지원 - 건강보조 지원
		▶ 기타서비스	-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
특화서비스		-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- 집단활동 -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	

○ 서비스 제공 기간

- 시·군·구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

  *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제공과정에서 대상자의 요청이나 전담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'재사정'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다시 결정(최소 연 1회 이상)

  **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의 경우, 서비스개시일로부터 1년

4 추진체계별 역할

○ 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)

* 해당 역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(특화서비스 포함)의 추진, 관리를 의미함.

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「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」을 적용받는 것이 바람직함(고용노동부)

<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) 역할>

추진체계	중요 기능
시 · 군 · 구	· 지자체 자체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 판단 · 결정 ·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 여부 등 결정 · 시 · 군 · 구 **노인맞춤돌봄협의체** 구성 · 운영 ·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 구성 ·운영 · 보건소 · 치매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· 안전사고, 사망, 위기예방 사례 등 대상자 특이사항 발생 시 수행기관을 통해 파악 · 분기별 1회 방문요양급여 수급자 현황을 수행기관을 통해 파악 * 장기요양 유인실태 확인 시 위탁계약 중도해지 및 향후 재위탁이 제한됨.

○ 노인맞춤돌봄협의체(이하 '협의체') 구성 · 운영

※ 시·군·구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의 목적·취지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

- (목적)

·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인돌봄 현안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 논의

· 신규 대상자 발굴 협력 및 지역사회 연속적 돌봄* 시행 등을 위해 요양과 돌봄 간 협력체계 구축

* 노인의 신체적·정신적 기능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

· 서비스 자격 결정 및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구

- **(개최 시기)** 안건 및 상황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개최

  * 자격결정심의 필요 시 수시 개최 가능

- **(회의 운영)** 시·군·구 권역별*로 운영(필요시 시·군·구 전체회의 실시)

- **(참석 대상)** 시·군·구 담당자(책임공무원), 관할 권역 내 읍·면·동 공무원, 노인맞춤돌봄서비스(특화서비스 포함) 수행기관장, 복지관장, 재가노인지원센터장, 장기요양기관장, 지역자활센터장, 보건소장, 치매안심센터장, 자원봉사기관장 등*

  * 중간관리자급의 실무자 대참 및 임명 가능

- **(회의 안건)**

· 노인맞춤돌봄서비스(특화서비스 포함) 운영계획 및 모니터링

· 노인맞춤돌봄서비스(특화서비스 포함) 운영 관련 주요 현안 사항 공유 및 논의

① 신규 대상자 및 위기·취약노인 발굴 계획

② 지역 내 복지자원의 개발·연계

③ 지역사회 노인 연속돌봄*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등

·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결정 및 제공계획 심의 운영

* 노인맞춤돌봄서비스(특화서비스 포함) 이용자가 장기요양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시설 입소 대신에 방문요양 등의 재가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○ 읍·면·동

< 읍·면·동 역할 >

추진체계	중요 기능
읍 · 면 · 동	·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접수 및 시·군·구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대상자 발굴 · 수행기관 협조체계 구축 ·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교육 이수

1)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접수 및 시·군·구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대상자 발굴
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이하 ‘ 행복e음’)을 통하여 전송받은 복지사각지대 명단(단전·단수) 및 시·군·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 따른 발굴 대상자를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, 정신건강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연계, 단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더라도 추가 서비스 필요 시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적인 기관으로 연계

2) 수행기관 협조체계 구축

- 읍·면·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, 이·통·반장 회의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대상자 발굴, 서비스 자원연계 구축을 위한 지원

5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사업 안내

○ **(목적)**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

○ **(추진방향)**

-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고독사 및 자살위험군 발굴 체계 구축
- 복지관, 경로당, 보건소, 병원, 자살예방센터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
-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상호돌봄체계 구축

○ **(대상)**

· 가족,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

(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60세 이상 하향 조정 가능)

· 참여자 특성에 따라 대상자 군과 개입 방법 달리함

구분	은둔형	우울형
대상	가족,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, 민.관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자	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, 가족.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, 고독사 위험이 높은 만65세 이상의 자
집단성과 목표	① 단절된 사회적 관계 회복 ②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구 충족	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우울증 및 자살 위험 경감 ② 사회관계 향상
개입방법	1:1 사례관리	1:1 사례관리 또는 집단 활동

○ **(서비스 신청권자)**

· 특화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(이하 '신청자')

· 신청자의 친족*(이하 '대리 신청자')

* 친족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
○ **(서비스 의뢰자)**

·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

· **읍·면·동 공무원**

· 지역사회 유관기관(이하 '의뢰기관')

○ **(서비스 신청 및 의뢰방법)**

· 서비스 신청권자

- 신청자, 대리신청자는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<서식 제 17호> 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

· 서비스 의뢰자
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(관내 의뢰 포함), **읍·면·동 공무원**, 유관기관 등은 특화서비스 의뢰 시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<서식 제 17호> 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

○ **(서비스 접수방법)**

· 신청자, 대리 신청자로부터 서비스 신청서 접수

- 직접신청 : 신청서 접수 후 초기상담 가능 시 상담을 진행하고, 초기상담이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 등의 절차 안내

- 대리신청 : 대리 신청자로부터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, 신청자에게 서류제출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

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 안내

·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(관내 의뢰 포함), 읍·면·동 공무원, 의뢰기관 등으로부터 서비스 신청서 접수

-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의뢰기관에 서류제출 및 접수 사실 확인

○ (서비스 접수 시 안내사항)

· 처리기한

- 서비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(공휴일 제외)

*처리기한 내에 초기상담 및 척도검사,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, 서비스 결정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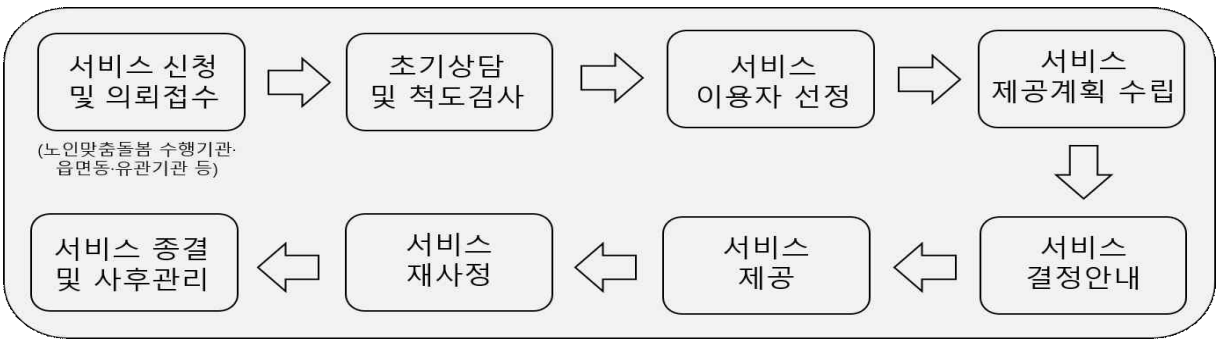
- 단,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신청자, 서비스에 의뢰된 자에 대한 상담 및 추가조사가 필요하여 처리기한 내에 초기상담,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결정안내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한을 넘길 수 있으나,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, 수행기관은 기관 내부 서류 등으로 관리 필요

· 초기상담 안내

- 서비스 접수 후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와 처리기한을 전화(문자(sms) 병행)를 통해 안내

※특화서비스 수행 중 수시로 사례실무회의 진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절차에 대한 재사정 필요(지침p.186참조)

○ (제공절차)



남구 현황

<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>

(단위: 명)

구분	이용자 사업배정량	이용자 현황		
		소계	노인맞춤돌봄서비스	특화
부산시 총계	32,642	29,094	28,368	726
남구 총계	2,659	2,588	2,531	57
남구노인복지관	818	792	735	57
남구종합사회복지관	529	537	537	-
용호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	783	779	779	-
청전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	529	480	480	-

※ 모인우리시스템 7월 기준(부산시 7월 사업추진현황 취합자료 요청 하여 변경 예정)

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원은 특화서비스 이용자 중복될 수 있음

<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홍보 및 발굴 현황 >

- 발굴 및 홍보: 17개 동 모두 발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 갖고 있음
- 방법: 통장회의를 통한 홍보, 고독사 안부전화 시 유선전화, 후원물품 지급 시 안내, 가정방문 시 필요 대상 신청 홍보, 통장 및 생활지원사의 적극 발굴, 노인복지 상담 시 서비스 안내, 단체회의를 통한 홍보, 기초연금 신청 시 안내

연번	소속	발굴 및 홍보 계획 여부	발굴 및 홍보방법
1	감만 1동	○	-통장회의를 통한 홍보 -고독사 안부전화 시 유선전화 -후원물품 지급 시 안내
2	감만 2동	○	-통장회의를 통한 홍보 -가정방문 시 필요대상 신청 홍보
3	대연 1동	○	- 통장회의를 통한 홍보 - 고독사 안부전화 시 유선 안내
4	대연 3동	○	-통장·단체회의를 통한 홍보 -통장님 및 생활지원사의 적극 발굴
5	대연 4동	○	-노인복지 상담 시 서비스 안내
6	대연 5동	○	-통장·단체회의를 통한 홍보
7	대연 6동	○	-통장·단체회의를 통한 홍보 -기초연금 신청 시 안내
8	문현 1동	○	-통장·단체회의를 통한 홍보
9	문현 2동	○	-통장회의를 통한 홍보 -고독사 안부전화 시 안내
10	문현 3동	○	-단체회의를 통한 홍보 -안부전화를 통한 안내
11	문현 4동	○	-통장회의를 통한 홍보 -고독사 안부전화 시 안내
12	용호 1동	○	-기초연금 신청 시 안내 -독거노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내
13	용호 2동	○	-통장회의 및 유선 상 안내
14	용호 3동	○	-통장회의를 통한 홍보 -고독사 안부전화 시 안내
15	용호 4동	○	-통장·단체회의를 통한 홍보 -생활지원사를 통한 홍보
16	용 당 동	○	-통장·단체회의를 통한 홍보
17	우 암 동	○	-통장·단체회의를 통한 홍보

Ⅲ. 수행기관 주요 애로사항 공유 및 논의

1. 신청자 정보 내용 상이

- 기본정보(집 전화번호, 보호자 연락처, 개인연락처)가 상이하거나, 신청 시 경제유형(수급, 차상위 등)이 적혀있지 않음
- 문제점 : 상담 시 경제유형(수급, 차상위 등)에 대해 정확히 몰라 파악의 어려움이 있으며, 보호자연락처가 없거나 상담 시 알려주길 꺼려하는 대상이 많아 어려움이 있음

2. 신규신청 시 사업안내 필요

-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서비스 제공 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접수가 많으며 장기요양등급자이나 서비스 받지 않는 중복대상자, 단순가사지원 희망자, 단순물품지원 희망자가 많음
- 문제점 : 대상자에게 명확한 안내가 되고 있지 않아 서비스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접수가 많아 방문 및 상담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함.

3. 읍면동 및 수행기관 협력체계 구축

- 물품전달 대상 선정 시 적절성 및 중복지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간의 교류 필요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수행인력(생활지원사)에 대한 이해와 내부 공유 필요
- 응급상황(연락두절) 발생에 따른 동행 요청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며, 입원이 경우 입원 절차 및 간병 등에 대한 대책 논의 필요

- 주민센터 대상자 발굴 연계(특화포함): 복지사각지대 및 사례관리 대상자 추천

4. 유사중복사업 대상자에 대한 규정

- 사업안내 책자 p7에 의거 시·군·구는 각 사업의 특성,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·판단하여 사업별 유사 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에 따라 유사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른 명확한 명시 필요(예: 노노케어 대상자, 노인일자리 진행 어르신 등)

5. 생활지원사 근무 시간 내 자원 연계 권고 및 기관을 통한 인력(생활지원사) 동원 요청(담당자 교육 중으로 인해 월요일에 논의 내용 작성 예정)

6. 주민센터 내 수행인력을 위한 무더위 쉼터 필요(담당자 교육 중으로 인해 월요일에 논의 내용 작성 예정)

Ⅳ.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실무협의체 정례화 논의

1. 회의 운영

- 권역별 / 시군구 전체 등
- 개최 시기 및 횟수 등

2. 참석 대상 논의

- 시군구 담당자, 관할 권역 내 읍면동 공무원, 수행기관(수행인력) 등

3. 회의/논의 안건 범위

· 노인맞춤돌봄서비스(특화서비스 포함) 운영 관련 주요 현안사항 공유 및 논의
① 신규 대상자 및 위기·취약노인 발굴 계획
② 지역 내 복지자원의 개발·연계
③ 지역사회 노인 연속돌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
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결정 및 제공계획 심의 운영

Ⅴ. 기타 안내 사항

■ 독거노인인식개선전 콘텐츠 공모전

○ **(사업대상)** 부산지역 시민 누구나

○ **(진행일정)** 2022. 7. 8.(금) ~ 8. 1.(월)

○ **(공모내용)**

구분	주제내용	공모대상
N행시	너의시대, 나의시대, 우리시대, 청춘야나두 (4개 중 택1 하여 작성)	부산시민 누구나
손편지	①부모님(할머니, 할아버지)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②젊은 시절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③후배 세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(300자 이하 작성 / 3개 중 택1 하여 작성)	부산시민 누구나
그림	①할머니, 할아버지와 함께한 추억 그리기 ②할머니, 할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은 일 그리기 (스케치북 8절지 / 2개 중 택1 하여 작성) (디지털, 유화, 수채화, 크래파스 등 별도제한 없음)	초등학교 3학년 이하
사진	건강하고 밝은 어르신의 모습을 찾아주세요 (300DP 이상 / 10Mb 이하의 용량)	부산시민 누구나

※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

■ 안부안심콜서비스(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주최)

- **(사업기간)** 연중
- **(사업내용)** 전문상담사가 독거노인에게 주 1회 안부전화 및 전화상담
- **(지원대상)**

① 안부안심콜서비스 사전 등록 이용자

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신청자 및 대기자 중 희망자

③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및 판정 대기자

④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상자 중 희망자

- **(지원방법)**
  ① 별도 신청서 작성 (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-게시판-공지사항 참조)
  ② 신청서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이메일(senior051@daum.net) 또는 팩스(051-462-2590) 제출
  ③ 대표번호 : 1588-5998
- **(유의사항)** 서비스 제공 수단이 전화로 난청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불가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신청 불가함

《 M E M O 》